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. 4. 11 선고 2020가단7095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대구지방법원 2023. 12. 7 선고 2023나309684 판결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. 4. 11 선고 2020가단70950 판결

전문

원 고 1. A

2. B

3. C

4. D

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목

피 고 1. E

2. F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우 담당변호사 윤희상

변론종결 2023. 1. 17.

판결선고 2023. 4. 11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피고 E와 G 사이에 2019. 12. 27. 체결된,
나. 피고 F와 G 사이에 2019. 11. 8.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
2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G에게,
가. 피고 E은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2019. 12. 27. 접수 제20257호로 마친,
나. 피고 F는 같은 등기소 2019. 11. 8. 접수 제1650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들의 G에 대한 각 채권

- 1) 원고들은 G와 사이에 각 건설기계사용계약을 체결하고, G의 요청에 따라 2019. 10.경까지 ‘H’ 신축공사 현장에 각 건설기계를 임대해주었다.
- 2) 원고들은 G을 상대로 위 각 건설기계 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2. 4. 20. “G은 원고 A에게 53,751,000원, 원고 C에게 16,115,000원, 원고 D에게 275만 원, 원고 B에게

27,588,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”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, 이는 2022. 5. 27.경 확정되었다(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가단14867).

나. G의 처분행위

그런데 G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, ① 2019. 11. 8. 피고 F와 사이에 채권최고액을 6,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, 같은 날 피고 F에게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, ② 2019. 12. 27. 피고 E과 사이에 채권최고액을 8,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, 같은 날 피고 E에게 주문 제2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(이하 ‘이 사건 각 근저당권’이라 한다).

다. G의 재산상태

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 당시 G은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253,189,110원 정도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에, 1) 소극재산으로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G의 피고들에 대한 각 차용금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.

순번	채권자	채무 내역	금액(원)	
			2019. 11. 8. 당시	2019. 12. 27. 당시
1	원고들	건설기계 사용료	100,204,000	100,204,000
2	I	공사대금	149,219,650	149,219,650
3	J조합	대출금	35,000,000	35,000,000
4	K조합	대출금	20,000,000	20,000,000
5	L카드	카드대금	8,329,000	6,928,000
6	M카드	카드대금	1,657,000	1,511,000
7	N카드	카드대금	20,100,000	20,500,000
합계			334,509,650	333,362,650

[증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2호증의 1 내지 제3호증, 제5, 6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, 포항시 복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, 이 법원의 O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(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)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G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, G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(피고 F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한 서면을 통하여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,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).

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수익자인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서 G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,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박현경

별지

· ·

1. 대전 대덕구 Q 대 166㎡

2. 대전 대덕구 Q [도로명주소] 대전 대덕구 R

벽돌맞시멘트 벽돌조 슬래브 위 기와지붕 2층 주택 1층 84.53㎡, 2층 49.98㎡

철근콘크리트 슬래브 지하실 93.335㎡. 끝.

1)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,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. 그러므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, 특히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바(대법원 2006. 2. 10. 선고 2004다2564 판결 참조), 피고들이 주장하는 G의 P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G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.